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7일, 박 정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8.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3.9.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 폐기)

제3차 국방위원회(2024.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 정 의원)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각 군에서도 폭염·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음.

이처럼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폭염·한파에 대해 현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현재 훈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함.

다만, 부대활동은 작전임무수행 뿐만 아니라 부대관리, 교육훈련, 대민지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행위가 외부와 내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전임무수행을 기준으로 나누기 보다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현행법에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의무 및 병영생활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실시 주체를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은 국방부장관이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 기준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다는 점과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에 대한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조치는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조치의 법적 근거는 마련을 하되,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훈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직무대리 한기호)

폭염·한파 등 「기상법」에 따른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